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 12. 11개정, '13. 12. 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 별정직의 직종개편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용어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정비

○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계획(2011. 10)에 의거 '14년도 복지직 순증분 인력(2명)을 증원시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복지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직종개편 주요내용(일반직 재편)

ㅇ 기능직

● 직렬 신설(3개) : 기술직군 ☞ 운전・위생・시설관리직렬

● 직렬 변경(7개) : 관리운영직군

☞ 전화상담운영・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 운영・농림운영・사무운영・보건운영직렬

ㅇ 별정직

● 별 정 직 : 별정6급상당(비서)

● 일 반 직 : 유사직렬(전담직위 지정)

● 전문경력관 : 나군(6・7급상당)

ㅇ 계약직

● 명칭변경 : 임기제(일반임기제)

나. 정원의 총수 조정 : 559명 → 561명(증2)

○ 집행기관의 정원 : 547명 → 549명(증2)

-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증원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변동없음)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 1)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85%이상	12%이내	3%이내
조 정	+14.5%	△12%	△2.5%
개 정	**99.5% 이상**	**폐지**	**0.5% 이내**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행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2% 이내	25% 이내	8% 이상	% 이내
조정		△0.8%	△2.8%	△2.8%	△0.1%	+5.7%	+0.8%
개정	**1% 이내**	**5.2% 이내**	**25.2% 이내**	**29.2% 이내**	**24.9% 이내**	**13.7% 이상**	**0.8% 이내**

- 기능직

구분	6급	7급	8급	9급
현행	7% 이내	17% 이내	26% 이내	50% 이상
조정	△7%	△17%	△26%	△50%
개정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 연구・지도직 : 변경없음

- 별정직

구 분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43% 이내	57% 이내		
조 정	+57%	△57%		
개 정	**100% 이내**	-	-	-

라. 직급별 정원표(별표 3)

○ 일반직 : 461명 → 528명(증67)

- 본　　청 : 증30명(6급 +4명, 7급 +7명, 8급 +7명, 9급 +12명)
- 의　　회 : 증 5명(6급 +1명, 8급 +2명, 9급 +2명)
- 직속기관 : 증 9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명)
- 사 업 소 : 증12명(7급 +2명, 8급 +5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3)
- 읍　　: 증 1명(9급 +1명)
- 면　　: 증10명(7급 +1명, 9급 +9명)

○ 기능직 : 폐지, 59명 → 0명(감59)

- 본　　청 : △27명
- 의　　회 : △4명
- 직속기관 : △8명
- 사 업 소 : △9명
- 읍　　: △1명
- 면　　: △10명

○ 별정직 : 7명 → 1명(감6) ※ 본청 비서요원

- 본　　청 : △1명
- 의　　회 : △1명
- 직속기관 : △1명
- 사 업 소 : △3명

○ 연구직 : 3명(변동없음)

○ 지도직 : 28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생 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 통보[도 자치행정과-7368(2013. 10. 21)호]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2. 12. 11일 개정되어 2013. 12. 1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직종 개편과 관련 정원 조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계획(2011. 10)에 의거 2014년도 복지직 2명을 증원시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